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12. 2.(목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팀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4410) 서상우 팀장(044-205-1861)	담 당 자	전성철 사무관(044-203-4419) 손우승 사무관(044-205-1868)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

- 지역균형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-
-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 등 규정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와 **행정안전부**(장관 전해철)는 **오늘(12.2)*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」(대안)이 **국회 본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**디지털·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**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**하는 등 **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법안 발의('20.6.15 최인호 의원, '20.8.4 서삼석 의원, '20.12.8 신정훈 의원, '21.1.19 강훈식 의원, '21.1.29 홍문표 의원) → 5개 법안 병합 및 산중위 대안 의결('21.11.23) → 법사위 의결('21.11.30) → 본회의 통과('21.12.2)

□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,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**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**하였다.

○ 우선, "지역균형뉴딜"의 정의를 '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,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'으로 규정함으로써 **지자체**가 **명확한 개념**을 **바탕**으로 **지역균형뉴딜 사업**을 **추진**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타 **균형발전정책**들과의 **연계성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·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.

○ 또한 지자체 주도로 기획·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,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**지역 주도**로 **추진**하는 **뉴딜**에 대한 **지원**을 **강화**하였다.

□ 둘째,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, **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** 하였으며,

○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.

□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,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**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**될 예정이며,

○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, **내년 상반기 중** 지역균형뉴딜 사업 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**하위법령 제·개정을 추진할 계획**이다.

【붙 임】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안(대안)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성철 사무관(☎ 044-203-4419),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팀 손우승 사무관(☎ 044-205-18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안(대안) 주요 내용**

조 항	주 요 내 용
제2조 1의3	○ **(지역균형뉴딜 정의)** "지역균형뉴딜"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,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
제4조 제7조	○ **(계획)**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(4조) 시·도 발전계획(7조)의 수립 내용에 "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" 포함
제11조 의3	○ **(지역균형뉴딜 심의절차)**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 수립·제출 → 행안부장관 검토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균형위 심의·의결 ○ **(지원절차)** 균형위 심의·의결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제18조	○ **(신설 공공기관 입지원칙)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제외)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 우선 고려 ○ **(입지결정 절차)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과 협의, 균형위 심의·의결을 거쳐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 ○ **(균형위 자료요구권)** 균형위로 하여금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자료*에 대한 제출요구 권한 부여 *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, 지방세 납부 현황, 사무소 소재 현황 등
제22조	○ **(균형위 심의·의결 사항)**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